

[참고 1] 한중핵심공동연구사업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직접비	인건비	1.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또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적급액 x 참여율* *참여율은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 ※ 인건비는 총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2.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학생인건비	연구참여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이 경우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 ※ 단, 미지급 계상도 가능 ※ 박사후연구원 및 타 대학 소속의 학생연구자는 인건비로 지급 함.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 통합관리하는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함. ※ 단, 행사개최를 위한 과제는 전후 최대 3개월간 인정
	연구시설·장비비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단,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함) 2.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전 2개월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1개월 전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비용 계상을 인정함.
	연구활동비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관련 비용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비용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를 말한다)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 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을 위	1.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해야 함.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해서는 안 됨. 가. 참여연구원·연구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참여연구원·연구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 기준 2.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p>하여 필요한 비용</p> <p>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숙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p> <p>4.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여비</p> <p>5. 소프트웨어 활용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p> <p>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p> <p>7.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p> <p>8.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p>	<p>상함.</p> <p>3.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다만, 이사장이 연구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공동세미나 지원 과제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음)</p> <p>4. 한국과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집행할 수 없음 (항공권 포함).</p>
	연구재료비	<p>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p> <p>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p> <p>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p>	<p>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단,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은 자산등록가로 계상함)</p>
	연구수당	<p>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p>	<p>1.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 미지급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하되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한다)의 20% 범위에서 계상함</p> <p>2.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하지 않음(단, 연구책임자 단독 수행과제일 경우 적용하지 않음)</p>
간접비	간접비	<p>1. 인력지원비</p> <p>가. 연구지원인력 인건비</p> <p>나.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력성과급</p> <p>2. 연구지원비</p> <p>가.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p> <p>나. 사업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p> <p>다.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 연구개발기관이</p>	<p>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5% 이내에서 계상(연구실안전관리비는 의무계상 예외, 공동세미나 개최를 위한 과제는 간접비 지급하지 않음.)</p>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p>대학인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p> <p>라.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p> <p>마. 연구보안관리비 :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대·중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등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p> <p>바.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p> <p>사.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 비용 등을 포함한다)</p> <p>3. 성과활용지원비</p> <p>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강연·체험 활동 및 연구실 개방, 홍보전문가 양성, 등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p> <p>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p> <p>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 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p>	

※ 파란색 글씨는 본 사업 특성을 반영한 기준임.